

G1.34

개혁과 인권

1994

법무부

# 개혁과 인권

법 무 부

## 발간사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지향하는 신한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창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며 다양성이 수용되는 사회입니다.

지난 일년간 국민과 정부의 결연한 개혁의지와 인권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 우리 인권은 국제적으로도 떳떳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책에서 우리의 개선된 인권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자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든지 이를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객관적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올바른 국내외의 평가를 바탕으로 인권보장 의지와 노력을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며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사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한민족 전체의 용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실상을 알고 그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의 인권도 간략히 언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 3

법무부장관 김 두 희

## 차 례

1] 개혁과 인권.....	7
신한국·개혁·인권	7
인권의 보장과 제한	10
2]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한 인권신장 .....	15
인권신장 기반 구축	15
구속자 석방·사면·복권	17
인신구속의 신증	19
금융실명제·통합선거법과 인권	21
법령정비	23
제도개선	29

---

③ 북한의 인권 ..... 37

북한의 체제 38

북한의 통일정책 41

북한의 인권 44

④ 국가보안법과 인권 ..... 47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필요성 48

외국의 입법례 52

국가보안법 개선내용 57

국가보안법과 인권 59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검토 61

---

---

⑤ 인권시비의 진상 ..... 65

인권신장과 인권시비 65

정치범과 양심수 69

미전향 장기수 78

고문등 가혹행위 80

보안관찰 84

사형제도 86

⑥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 88

---

## 1 개혁과 인권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의 개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신한국·개혁·인권

지난해 2월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향을 향해 힘찬 항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리의 5천년 민족사의 흐름에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된 장엄한 출항이기도 하였다. 실로 지난 1년간 우리는 가장 역동적 상황에서 우리 역사의 총량을 단숨에 압축하는 것처럼 숨가쁘게 살아왔으며 모든것이 재생성되고 통합되는 거대한 물굽이를 휘몰아 왔다.

문민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향한 대망의 2000년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이 땅에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며, 아울러 21세기를 여는 민족사적 과제에 충실한 길이기도 하다.

구시대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우리가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지고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는 국민들의 욕구증대는 지난 여러해 동안 민주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폭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국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선출되어 문민정부가 탄생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정부의 정통성 시비를 완전히 극복함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혁과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와 개혁의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문민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며,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 등을 그 속성으로 하고, 국민 모두의 자유·평등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사회안에서 활기차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철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이며, 개혁은 그 인권의 옹호와 신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의 개혁의지는 우리의 정치제도 및 정치운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절차 등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적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정착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담화문에서 국민모두에게 개혁의 주체

가 될 것을 촉구하면서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개혁의 아픔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민정부도 개혁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의 개혁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인권의 보장과 제한

### ■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 기본적 권리가 인권이며 이는 국가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개별적인 인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인권 또한 인종·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이와같은 인권은 18세기 당시 절대군주제 하에서 횡행하던 인간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과 인간 존엄성의 무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대두되면서 형성되어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하여 발전해온 것이다.

### ■ 인권의 내용과 보장

1948년 유엔(United Nations)에 의해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로서는 생명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참정권, 망명권, 노예제와 고문 및 임의구속 등의 금지 등을 들고 있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는 교육권, 노동조합결성권, 동일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최저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들어있는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권리를 총망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실정법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인권의 제한

인권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타인의 인권을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은 다른 측면에서 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다. 인권은 한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권리이며 그것이 사회에서 보장될 때만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사회의 이익과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공복리에 위배되서는 아니된다 할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외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제8조 제4항), 언론·출

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21조 제4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그쳐야 할 것이고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은 각국의 문화전통 및 사회상황에 따라 그 보장 및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회상황상 경제발전의 절박한 필요가 있거나 사회혼란과 같은 등으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권제한이 많은 편이다.

위와 같이 인권은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다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사회상황 때문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의 관계에서 인권의 보장방법과 각국 정부의 인권보장능력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인권보장에 있어 철저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서부개척 및 독립전쟁시대 아래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총기소지

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늘날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점을 볼 때 개인에 대한 무한한 자유의 부여만이 지고·지선의 가치는 될 수 없는 것이다.

## 2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한 인권신장

“인권의 보장은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부의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인권신장 기반 구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을 지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철도는 인권이며, 개혁의 실천과제의 요체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이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빼아픈 교훈으로 삼아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서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이다”, “어떤 이유로도 고문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한다”는 등 인권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다.

인권의 보장은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부의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하여도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든 법과 제도는 그 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는 30여년만의 군사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출범하여 종래의 정통성시비를 종식시키고 도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 자신 있게 인권신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문민정부는 의거로 평가절하되었던 4.19를 혁명으로 재평가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밝히면서 현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규정하는 한편,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인 사건이라고 재조명하면서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종래 반독재구호를 외치면서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거부하던 재야인사들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실제로 성취된 사회의 인적·구조적 개혁을 지켜보며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신정부가 단순히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신장을 위한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구속자 석방·사면·복권

문민정부의 인권신장 의지와 관련, 가장 과감한 조치로서는 역시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들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실정법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 범죄동기와 시대상황,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므로 문민정부는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행위나 파괴·폭력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인권침해 문제로 등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3월 6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 최대의 대사면을 실시하였다. 미전향 남파간첩의 석방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찰사상자를 낸 등의 대 사건의 관련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공안사범 5,812명의 사면

·복권등 총 40,913명에 대한 대사면이 있었다. 정부는 1993년 5월 25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437명 전원에 대한 형선고실 효특별사면, 전과기록말소, 수배해제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명예회복을 하였다. 또 한 정부는 1993년 12월 14일 전교조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하여 복직장애사유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3년 10월 25일에는 지난 정부의 공안관련사범 수배자 255명중 간첩등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자 일부를 제외한 230명에 대하여 불구속처리하고 지난 1년동안 5회에 걸쳐 총 4,956명에 대한 특별가석방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제반의 조치는 과거 갈등시대의 반목을 해소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 지나간 시대의 일부 잘못된 법운용을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의 인권침해 논란은 종식되고, 이땅에 새로운 인권의 장이 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인신구속의 신중

문민정부의 인권신장 의지와 관련된 또 다른 조치의 하나는 인신구속의 신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신을 구속할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민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여 인신구속의 신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에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대량 구속과 대량 석방이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경시 풍조를 만연케 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구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지난날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폭력적인 불법시위나 과격노사분규가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정

부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다. 즉 위와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 지휘하에 관련자들을 개별 심사한 후 그 주 동자나 극렬행위자만을 엄격히 선별하여 구속하는 등 정부는 지난날과 같은 대량 구속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구속자에 대한 최근 현황을 보면, 1989년 429명, 1990년 449명, 1991년 310명, 1992년 305명에서 1993년 12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정부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노동관계법위반사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 등에 있어서도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구속 숫자가 격감하였다.

#### ○ 노동관계법위반사범 구속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89	90	91	92	93
인 원	222	95	180	117	66

#### ○ 집시법위반사범 구속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89	90	91	92	93
인 원	319	188	209	104	36

#### ○ 화염병사범 구속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89	90	91	92	93
인 원	159	874	462	105	25

물론, 이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노사분규와 시위 등이 감소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나 구속에 신중을 기한 현정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지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 금융실명제·통합선거법과 인권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하면서 금융실명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이라고 언급하며, 개혁중의 개혁이요 우리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천명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정부패의 근절 및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었다.

경제는 사회조직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경제의 왜곡은 사회체제내의 모든 조직과 구성요소를 왜곡시키게 된다.

과거의 경제·사회적 왜곡과 그 속에서 일부 도외시되었던 인권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바로잡힐 수 있게 되었다.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땀흘려 일한자만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실질적 의미의 인권보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3월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흔히 「통합선거법」으로 불리우는 새 선거법은 선거개혁 나아가 정치개혁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법이다.

이제 종래 기승을 부렸던 금권·타락선거는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사랑방좌담회의 금지, 선거비용영수증의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 연좌제의 확대 등으로 종래 돈에 의하여 굴절되었던 민심이 이제는 보다 올바르게 정치의 장에 투영될 수 있게 되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당정책과 후보자의 정견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종래에는 올바른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 출마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통합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정치개혁의 근간을 마련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 법령정비

문민정부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초점을 맞추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동안 대공수사면에서 남다른 공적을 쌓아 왔음에도 과거 일부 파행적인 운영으로 정치공작과 인권탄압의 대명사처럼 오해되고, 그 평가가 절하되었었다. 지난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개정치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오던 중 신정부 출범후인 지난해 12월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법을 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개정법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시켰고, 안기부의 정치관여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금과 변호사 접견권 방해 등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인권침해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보장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으로 고문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은 곧바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가 은폐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은 수사중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동법의 제정은 문민정부가 성취한 중요한 혁신법중의 하나이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대상을 한정하고 그 제한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도청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와같이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등의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더 한층 보장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하게 되었다. Q.C.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

개정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징역·금고형의 실효기간

을 형기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고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전과기록의 외부누설방지도 규정하였다. 특히 동법에 의한 형실효기간 단축은 수형인의 선거권·피선거권등 참정권을 확대하고 그의 사회활동제약을 해소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동법의 제정은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문민정부가 달성한 중요한 입법적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와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 사생활의 침해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법은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규율하고 개인의 정보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동법 개정 역시 문민정부 들어 달성된 중요한 입법적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정법은 종래 군사기밀보호법이 군사기

밀의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고쳐 ‘누설시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사항’으로 축소하여 정의하는 한편, 국민의 군사기밀공개요구권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 권리(知情權)를 보호하고 있다.

###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정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행정개선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정된 이 법률은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규제심사제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로 민원옴부즈만제도에 해당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행정부의 거부처분의 이유명시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과정에 있어 개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 ■ 정치적 권리 관련 법률 개정

정치적 여론형성에 참여하고 선거등을 통하여 정치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체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지분(持分)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단 공무담임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참정권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리 정치영역에서의 자기실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개정입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정당법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재산등록범위의 확대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원칙의 도입 등으로 공직기강의 확립,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의 방지, 재산축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공직취임의 정치적 심사가능성 확보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개정 정당법은 정당창당의 요건으로 법정지구당의 수를 종전 48개에서 24개로 축소하여 정당설립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당결성 및 활동의 폭을 넓혀 참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 사회적 자율성 관련 법률 개정

문민정부하에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사회단체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회원수가 50인 이하인 사회단체의 경우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사회단체 신고업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또 사회단체의 정기보고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여 불편을 줄인 주민등록법 개정, 규제완

화를 위한 각종 기업관계법령의 개정등은 국민의 사회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권신장에 기여한 개혁조치라 하겠다.

### ■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문민정부 들어 여성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보호장치를 강구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장애인에 대한 의무무상교육등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진흥법의 개정, 개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의 제정등은 사회복지의 증진 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된 인권신장을 위한 조치라 하겠다.

###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문민정부 들어 이루어진 환경권에 관한 법제상의 변화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화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그 대책을 강

구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 제도개선

#### ■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

*기증구속법*

적법절차 준수

문민시대에 들어서면서 검찰등 수사기관의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적법절차의 철저한 준수이다.

사건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도 중요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준수가 보다 더 중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등 법 소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시가 종전에도 있었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적법절차의 준수가 그 어느때보다도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더욱 강조되어 왔다.

1993년 10월 4일 전국 검사장회의시 법무부장관은 “사건자체의 공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건조사의 절차까지도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였고 대검찰청도 적법절차에 관한 지시에서 피의자의 구속신중,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방지를 강조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현행법 체포시나 긴급구속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사후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구속기간산정, 미결 구금일수 통산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제거토록 하였고, 임의 동행은 피동행인의 진정한 승낙을 전제로 실시하되 임의동행 후 장시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을 근절토록 하였으며, 긴급구속등 피의자 신병확보 과정에서 구속이유고지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토록 하였다.

### 지문채취제도 개선

인권옹호와 관련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문채취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겠는데 종래 고소·고발사건 수사시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피고발인 모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1994년 1월 1일부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위 지문채취제도 개선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불쾌감과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주게 된 것이다.

### 민원전담검사제 시행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

하기 위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민원전담검사를 배치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제도를 199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다.

민원전담검사제 시행으로 검사가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민원실 부조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고소·고발인 즉일조사 제도

종래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그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검찰은 1993년 5월부터 고소·고발장 접수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 고소·고발인을 당일 조사함으로써 고소장 등 제출 후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재차 출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야간수사 제한 및 폭행·폭언 근절

종래 문제된 가혹행위 사례의 대부분이 야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가혹행위 근절차원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간수사를 금지하였다. 야간수사 금지로 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 오해의 소지를 대폭 줄였으며 피조사자가 야간에 심적불안상태에 놓여 제대로 자기변호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시 폭행·폭언의 엄금지시를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기타 제도 개선

그 외에도 민원사무처리제도를 개선하여 처분검찰청 외에 주거지 관할청에서도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에 따라 석방하여야 할 구속피의자나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몰전에 석방지휘를 신속히 함으로써 당사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사례를 일소하였다.

### ■ 행형제도 개선

#### 재소자 합동접견

종래 1급수형자 등 일부 재소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합동접견을 모범수형자, 무기수형자, 고령자 등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교도소 정원등 개방된 장소에서 다수의 재소자가 가족과 자유롭게 접견하게 함으로써 수형생활에서 오는 가족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처우현장을 공개함으로써 교정효과를 증대하였다.

#### 재소자 외부통근작업 실시

출소를 앞둔 재소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케 하고 작업상여금 지급으로 출소 후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5개 교도소에서 55개 사업체에 1일 평균 990명에 대하여 통근작업을 실시하였다.

#### 교정기관 민원업무 개선

1993년 8월 12일부터 교정기관 민원실에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 및 접견실을 별도설치하여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종래 3인 이내로 제한하던 가족접견의 허가범위를 5인 이내까지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소자의 처우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교정시설 참관범위 확대

종래 학술연구를 위한 교수, 대학생 및 외국인 교정관련 인사 등 일부인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하던 교정시설 참관

범위를 1993년 5월 24일부터 재소자 가족, 지역주민, 학생, 언론인 등 사회일반인에게도 허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정현장의 소개와 참관기회 확대로 교정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아울러 교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소자 급식 개선

1994년 1월 1일부터 재소자와 감호자의 주식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인의 식생활에 접근되도록 함으로써 재소자의 처우를 향상시켰다.

### 신입재소자의 지문채취제도 폐지

1993년 12월 1일부터 신입재소자의 범죄경력조회용 좌·우 열손가락 지문채취제도를 폐지하여 재소자의 명예를 보호하였다.

## ■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 출입국심사 절차의 개선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시 전산검색 생략으로 입국심사 시간을 종래보다 1/2로 단축시키는 등 각종 출입국심사절차를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였다.

### 출입국관련 민원환경 개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 안내카운터를 설치하여 안내요원 고정배치 및 민원인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전화자동민원 안내 및 컴퓨터를 이용한 출입국 행정안내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1993년 3월 2일 서울도심공항터미널에 김포사무소분소를 설치하여 출국심사업무 및 출입국관련 제증명 발급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도심거주 내·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 외국인의 지위 및 인권보장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소수에 불과한 출국정지자의 적발을 위해 외국인출국자 전원에 대한 전산검색을 함으로써 출국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출국외국인에게 불편을 주어왔으나 외국인 출국심사시에 전산검색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난민협약가입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보장키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정의 및 그 인정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 ■ 법률복지 향상

법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발족된 이래 법률상담 169만여건과 법률구조 14만 8천여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인권옹호 및 법률서비스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는 국가가 소송수행을 도와주는 법률구조 범위를 근로자의 월소득기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국민의 54%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법률구조 사건의 변호사비용 상환면제 범위를 승소금액 300만원 이하 사건에서 500만원이하 사건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뿐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1일부터 법률상담사례 204건을 음성입력하여 24시간 전화자동법률상담(전화번호 700-2080)을 실시한 결과 1993년 12월 31일까지 139,595건의 법률상담을 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법률상담, 야간 및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④ 2023. 8. 30. 10:00 AM  
⑤ 2023. 8. 30. 10:00 AM  
⑥ 2023. 8. 30. 10:00 AM

### 3 북한의 인권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한민족 전체의 융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체에 걸쳐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전체에서의 신체·양심·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활동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상황과 인권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 주민을 이러저러하게 탄압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어려함이 진정한 한민족 전체의 자존과 융성의 길이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성키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분단 이래, 북한이 한국전쟁, KAL기 폭파, 베마랑군폭발사건등 그간 수없이 도발을 저질러온 사실과 우리는 방어적, 수세적 차원에서 그들의 도발에 대응하여 왔던 현실에 비추어 북한의 체제와 통일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 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들의 상황과 인권을 직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력등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한민족 전체의 융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보다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북한의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북한의 체제

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 사회의 지도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북한체제 속성을 알기 위하여는 과연 북한사회의 지도사상이 무엇인가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고 북한 노동당이 정치를 지도한다는 원칙에 의거 헌법보다도 당규약이 우위에 있다.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은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하면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과 헌법이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사상의 속성은 무엇인가.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발간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김일성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라고 하면서 주체의 영도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가장 정연하고 위력한 영도체계를 밝혀 준다. 혁명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이념을 철저히 실현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다. 혁명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밑에 움직이며 수령의 후계자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를 철저히 보장해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

한편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그 본질이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본요구에 대하여 「수령을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토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신다는 것이며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을 위하여 살고 수령을 위해서

는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한다는 것이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는 수령 즉 김일성부자를 뇌수(북한의 혁명적세계관에 나오는 표현으로 뇌를 말함)로 하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아서 그의 말한마디로 전 국가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획일적 집단체제라 할 것이다.

수령은 법과 조직의 위에서 신과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명령하고, 북한의 모든 주민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는 북한체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체제가 아니라 전대미문의 독재체제라 할 것이다.

## 북한의 통일정책

1992년 개정된 북한의 신헌법(제9조)에서는 구 헌법 제5조에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구절을 삭제하면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여 일견 북한의 통일정책이 변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 완수'라

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혁명전략의 포기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미국에 의하여 강점된 식민지라고 규정한 다음 우리민족의 최대의 과업은 미국의 식민지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여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남·북한을 주체사상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철학사전의 「반제반미투쟁」, 「김일성 혁명사상」 풀이중).

한편 역사상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국민들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어놓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철학사전의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풀이중).

나아가 계급교양을 통하여 당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원수들과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하고, 전쟁공포증, 염전사상, 평화적 기분을 배격하여야 한다고 한다(철학사전의 「혁명교양」, 「혁명적세계관」 풀이중).

따라서 북한헌법상의 평화통일이란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좌익폭력혁명이 일어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정부를 들어

서게 한 다음 그 정부와의 통일을 구사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숫자으로 지상무기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우세하고 공중무기체제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등 전반적인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병력을 전체인구의 4%가 넘는 101만명을 유지하면서 핵무기개발, 고성능미사일개발등을 위하여 북한주민의 어려운 생활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도발하였을 뿐아니라 정전후에도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아니하고 1968년에는 청와대습격을 위하여 무장간첩단을 남파하고, 1983년에는 베마랑군폭발사건으로 정부요인을 살해하였으며, 1987년에는 KAL기를 폭파하여 무고한 115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각종 테러행위를 자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테러행각은 지난 3월 8일 겸거된 이복형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그는 1992년 4월 동남아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 AS(Asia Sharon)에 가입한뒤 1992년 4월부터 1993년 11월 19일 까지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에서 범죄조직단원 50여명으로 하여금 테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하여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의 전복 내지 변란 목적으로 국내외의 조직을 통하여 간첩단을 파견, 우리사회의 혼란과 파괴를 꾀할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대남비 난방송을 하는 등 평화를 지향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들 제반사실 또한 지금도 북한의 기본통일전략이 종전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위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제반결정은 국제원칙을 무시하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북한의 인권

김일성을 뇌수로 하는 북한체제에서는 북한주민들은 오로지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뿐 거주이전, 직업선택, 언론·출판, 종교·사상 기타 그 어느 자유도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북한은 가히 세계최악의 인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 및 서신을 철저히

감시·개입·검열하며, 주민에 대해 「사회주의 생활규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보금자리여야 함에도 각 가정마다 김일성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북한도 동양적 가부장 제도에 기초한 사회이므로 만일 체제의 통제가 없다면 김일성부자의 사진 대신에 각 가정의 부모 또는 웃어른들의 사진이 걸려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사상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도 전무하다. 북한의 언론기관은 물론이고 그곳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도 철저히 검열되고, 정부의 공식보도지침을 벗어나는 보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예술활동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연극·영화·오페라·서적 등의 주요 기능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과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개인숭배 조장에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전체에 정보망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공중집회도 개최될 수 없다. 노조와 직능단체는 그 단체 구성원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국내여행이 엄격히 통제된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밖을 여행하려면 여행증이 필요하며, 여행증은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여행 등에만 발급된다. 게다가 여행증 발급 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해외여행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공식대표단, 당국의 신임이 두터운 예·체능 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사상범·간첩행위자도 아닌 KAL기 피랍승무원과 납북어부 등의 송환을 거부하고 20년 이상이나 북한에 억류·구금하고 있는데 이처럼 크나큰 인권침해 행위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브르조아지의 기만적 구호라고 치부하면서 대부분의 기본권을 부인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4

## 국가보안법과 인권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국가보안법이 일부 잘못 운영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재야단체등으로부터 동법이 반통일적, 반인권적 법률이므로 개정·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 5월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이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며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시비는 진정추세에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정부 관리나 국제인권단체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으로 야당이나 언론등에서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개 폐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필요성

### ■ 제정배경

우리는 광복이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투쟁을 겪었으며 이러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그러나 남로당등 좌의세력이 정부수립 이후에도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와해시키려고 집요한 파괴책동을 계 속하므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형법이 1953년 9월 18일에야 비로소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얼마나 시급했던가를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후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의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동조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

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 ■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 현재의 안보상황

세계적으로는 냉전구조가 와해되어가는 추세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먼동이 트기 전의 깊은 어둠처럼 화해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통일을 향한 동반자로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민족 공동체의 성원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민족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2년 2월 19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정식으로 발효시켰으며 최근에는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수차례 가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 부자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는 일방 최근까지 대규

모 간첩단을 조직하여 우리 체제의 와해책동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관영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전복·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위적·방어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무장한 적 앞에서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등 국내의 좌익세력이 끊임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고 있어 이러한 좌익세력들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것이다.

### 형법규정의 미비점 보완

형법에도 국가안보를 보호법으로 하는 内亂·外患罪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들로써는 북한 및 그 동조세력의 각종 자유민주체제 위협행위를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외환죄는 외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역으로 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법상 북한을 위한 간첩등 외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북한공산집단 및 동조세력의 간접침략을 규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의 이러한 빈틈을 메워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특별형사법이다.

### 북한 안보형사법에 대응

북한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그 헌법의 목적수행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바, 반혁명 적대분자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그들의 통치자인 김일성주석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여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을 “적” 또는 “원쑤의 편” 등으로 지칭하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행위를 “반국가범죄”라고 정의하며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주권전복 음모죄(제44조), 테러죄(제45조), 공민의 조국반역죄(제47조) 등 주요 반국가범죄에 대해 대부분 사형 및 전재산몰수로 처벌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우리나라와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은 물론 자기의 체제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일체의 언동을 처벌하는 점에서 우리 안보형사법보다 훨씬 광범위한 처벌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민주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을 깨뜨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허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형사법체계를 도외시한 채 국가보안법만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 외국의 입법례

그러면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자유민주체제가 양보와 관용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 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입법의 형식과 내용은 상이해도 나름대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보형사법체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 ■ 미국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훨씬 적은 미국도 형법에 반역·내란 등 활동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어 국가안보위해사범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복활동통제법」과 「공산주의자동제법」을

두어 공산주의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형법을 보면 간첩죄(제794조), 반정부단체구성·가입죄(제2385조), 불온유인물제작·배포죄(제2385조), 반역불고지죄(제2382조) 등을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전복활동통제법은 공산주의활동이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산주의활동에 관해서 타인과 공모하거나 합의하는 행위, 공산주의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공산주의자가 비밀정보를 취득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에 대하여는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우편등 수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동제법은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공산주의활동이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공산당에 대하여는 단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산당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구성원으로 남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독일

독일 형법은 위헌정당·단체의 조직·유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반하는 문서의 제작·반포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간첩행위는 타국의 첨보기관을 위한 간첩, 외국단체등을 위한 간첩, 국가기밀누설 등 3종류로 나누어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배반 등

의 불고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 프랑스

프랑스 형법은 입헌제도 파괴·변경, 국토보전침해를 무기금 고로 처벌하고 있고, 간첩행위로서 국가기밀 누설과 국방시설 등 침입, 외국기관과의 내통 등을 중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반역·간첩 등의 불고지죄를 규정하여 전시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금고에, 평시에는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 일본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은 내란·외환을 위한 문서·도화의 인쇄·배포·제시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교사·선동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국은 각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장치로서 안보형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안보형사법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법정형을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 ※ 국가보안법조항 내용과 법정형 대비

범죄유형	국가 보안법	북한 형법	미국 법
간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국가단체구성 원의 간첩</li> <li>-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제4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첩행위</li> <li>- 사형 및 전재산 몰수, 7년이상 노동교화형(제4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정부·국민들을 위한 간첩</li> <li>- 사형, 무기징역 또는 부정기형(형법 제794조)</li> </ul>
불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첩관련행위에 대하여만 불고지죄 인정</li> <li>- 5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제10조)</li> <li>※ 친족의 경우 필요적 감경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방임죄 인정</li> <li>- 3년이하 노동교화형(제5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역 불고지 - 7년이하 징역, 1천불이하 벌금(형법 제2382조)</li> </ul>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괴: 사형 또는 무기징역</li> <li>- 간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li> <li>- 기타: 2년 이상의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전복음모 가담, 폭동참가</li> <li>- 교사·주모·주동자: 사형 및 전재산몰수, 10년이상 노동교화형</li> <li>- 기타: 5년이상 10년이하 노동교화형(제4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전복교사·권고동 단체구성·가입</li> <li>- 20년이하 징역, 2만불이하 벌금, 5년간 공직취임금지(형법 제2385조)</li> </ul>

범죄유형	국가보안법	북한형법	미국법
이적표현물 제작	○ 이적표현물 제작등 - 7년이하 징역 (제7조 제5항, 제1항)	○ 반국가적 범죄 행위 선전·선동 - 7년이하 노동 교화형(제46조)	○ 불온유인물·출 판물 제작·배포 등 - 20년이하 징역, 2만불이하 벌금, 5년간 공직취 임금지(형법 제2385조)
찬양·고무	○ 찬양·고무·동 조등 - 7년이하 징역 (제7조 제1항)	○ 반국가적 범죄 행위 선전·선동 - 7년이하 노동 교화형 (제46조)	○ 반국가적 의도 하의 공모·합의 - 10년이하 징역, 1만불이하 벌 금, 공직·명예 직 취임금지 (전복활동통제 법 제783조)

## 국가보안법 개선내용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제10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와 인권침해방지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개선·보완되어 왔다.

특히 1991년 5월 31일 제7차 개정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

동법 제1조 제2항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엄격하게 제한하였고(제2조 제1항), 국외공산계열 관련 반국가단체의 개념 및 관련처벌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또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그밖의 것으로 구분하고, 그밖의 것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완화하였고(제4조 제1항 제2호), 금품수수, 잡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남용여지를 봉쇄하였다(제5, 6, 7, 8조).

한편 불고지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죄의 불고지는 처벌하지 않게 되었으며 친족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제10조), 필요적 자격지병과 규정을 임의적 병과로 변경하였다(제1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었으나 1994년 1월 5일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 구성등)와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 직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아울러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승인하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인사와 접촉·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상호교역과 협력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순수목적의 교류협력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 국가보안법과 인권

### ■ 기본적 권리 제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권리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기본원칙이다.

국가보안법도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언론·출판·창작·학문·예술·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의하여 사상·언론·출판·예술·창작·학문의 자유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동법의 해당조항을 엄밀히 고찰해 보면 이러한 주장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을 내심으로 포지하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표현이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옹호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 양심의 자유

마찬가지로 동법 제10조(불고지)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 불고지죄는 특정인의 사상이나 내면적 윤리관을 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내면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본권제한이 가능한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안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1991년 5월의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위 불고지죄의 대상범죄는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는 더욱 없다 할 것이다.

## ■ 결사의 자유

동법 제3조(반국가단체), 제7조(이적단체)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 제3조와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체제를 전복하는 단체의 결성은 용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검토

### ■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앞서 본바와 같이 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노력과 국민·언론의 감시노력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94년 1월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나 국제인권

단체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근거가 없게 되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안보형사법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 ■ 반통일적 법률 주장에 대한 검토

일부에서는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채택한 상태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북한과의 접촉등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반통일적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법체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또는 “반국가적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우리의 국가보안법만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통성까지 양보하라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여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점이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편입하지 않고 한시적 특별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북한과의 교류·협력으로 통일과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반국가적 의도가 없는 평화적 교류·협력행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 ■ 결 론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결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법률이 아니라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내 좌의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한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법률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는 본연의 기본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정한 화해·협력 단체로 발전하여 더이상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나 북한이 해가 뜨기 전의 짙은 어둠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국가보안법을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과거에 인권침해문제로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문민정부 하에서는 정치탄압·인권탄압 등 구조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만에 하나 수사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다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그와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다.

## 5 인권시비의 진상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권시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부 재야단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인권시비가 없어진 상황이다.

### 인권신장과 인권시비

문민정부 출범후 국민과 정부의 인권옹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인권상황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비해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권시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부 재야단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인권시비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인권개선상황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아 1994년 2월 1일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무부 93연례 인권보고서」에서는 우리 신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윤리법개정등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축소, 인권남용방지 등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권이 혁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위 인권보고서는 1994년 2월 3일 우리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1994년 3월에 발간된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변호사 접견권 보장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 등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의 위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일부 주장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것으로서 사실과 상당분분 동떨어져 있다.

동 단체는 매년 각국에 파견하는 대표단으로부터 주요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때 각국 정부의 답변, 구금되었던 자나

### 〈1994. 2. 3.자 한국일보 보도내용〉

大同關이 진위관후對北關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여전히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그 러나 지도부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과 부른 풍물 체제 관리 면에서 최근 몇 년사이 점점 이부두 완화되는 조짐이나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인권 「여부」 진단이 옛나라 제한적인 변화만 이뤄졌다고 지적해 美정부가 최대국(MFN) 대우 갱신을 놓고 北京과 계속 마찰

특히 친북세력을 강제하  
견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경우 「간접적인 평화」의 영  
향이 여전히 상영한 것 같  
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美日부 연예인  
권보고서 중 남·북한 부분  
직자 윤리법을 제정·실행  
에 옮겼다. 정부는 정부가  
관의 국내정치개입장지,  
민간인사찰금지, 인권침  
용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적·제도적인 개혁을 추  
진했다. 또 군에 대한 민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 법  
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 노동여성분야 국제기  
준으로 불파 약간 떨어지  
는 기본적인 노동법률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정부는  
쟁의 발생시 휴전 중립적인

봉선주의자 및 친북한전쟁  
사상의 표현에는 여전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쇄매체에 대한 직접적이며 통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인적·제도적改革단행·수차례特赦실시  
北韓은 여전히 심각: 정치범 약 15만명

# 한국人權 작년 현저히 개선

美術부 「93년도 미술 보고서」

၁၀၁

간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을 빙<sup>氷</sup>으로 일<sup>日</sup>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학<sup>학</sup>에서 국<sup>국</sup>  
보안법이 여전히 존재

기본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가 보안법이 친북한 세력들에 의한 국가전복활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표현과 여행의 자유를 견지하고 있다. 일부 진영은 있지 않지만 계속 차별대우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분야 거의 모든 정치적 발언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그 가족, 인권단체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진실발견에 노력하지만 구속자등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기초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각국 국민의 법감정·사회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심수, 사형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에서의 병역거부자를 양심범이라고 간주하여 이들 국가를 비판하고 있고, 사형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지의 국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소위 시국사범의 성향, 우리의 안보상황과 법의식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자등의 의견을 과신한 나머지 문민정부하에서 개선된 인권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동 단체가 주로 문제삼은 정치범과 양심수의 구속, 미전향 장기수의 구금, 고문등 가혹행위, 보안관찰로 인한 인권침해, 사형제도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정치범과 양심수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특별보고서의 상당부분을 정치범과 양심수문제로 할애하며 우리 신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범등에 대하여 대규모 석방조치를 하였지만 아직도 280여명의 정치범과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는 등 인권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위 정치범과 양심수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 정치범

#### 개념과 논의 배경

정치범 문제는 연혁적으로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문제와 관련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되어 왔다. 즉,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주한 범법자에 대해 두 나라 간에 범죄인 인도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가 정치범인 경우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정치범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된 범죄인이 정치적인 사유로 부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범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학자에 따라 각양각색  
이어서 완벽한 정의를 찾기는 곤란하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정치범을 “정치적 요소 내지는 동기  
에 의한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정의가 어떠하든 범죄행위에 정치적 목적 또는  
동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요컨대 정치범에 관한 문제는 이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거나  
구속된 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전제로 법률상 어떠한 처우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논의  
의 초점이 모아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위 정치범의 개념을 양심범의 개념과  
구별없이 혼용하여 편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범문제를 차  
우문제로 다루지 않고 후술하는 소위 양심범에 있어서의 석방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금된 일부 범법자를 그들 임의로 정치범  
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며 이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논의의 각도부  
터 틀린것으로 그러한 의미로서 정치범을 파악하는 시각은 교  
정되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서는 정부를 반민주적 독재정권으로  
간주하여 민주화만 주장하면 심지어 파괴·폭력행위를 한 자라  
도 소위 정치범에 포함시켜 그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이 일반  
국민의 공감까지 받기도 하였으나 민주적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소위 시국  
사범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복권조치를  
한 현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 정치범의 석방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993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구금되어  
있는 정치범이 28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표현과 결사  
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침해당한 채 구금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구금되어 있는 공안사범은 간첩활동을 하거나  
계급·폭력혁명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불법노사분규를 조종하는  
등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구속되어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즉시 석방  
되어야 할 정치범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구금생활중 가혹행위  
나 불이익한 제한을 받음이 없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은 대우  
를 받고 있다.

## ■ 양심수

### 개념과 논의 배경

양심수라는 용어는 법과 양심이 충돌할 경우 어떠한 법적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도 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제사면위원회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 도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 된 자를 양심수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법률적 의미에서의 양심범의 문제는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실정법상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양심에 따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에 그 오인이 정당한 사유에 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양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행위자의 결단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양심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간통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법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수이고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으므로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특정 개인의 양심적 결단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상 결코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총의를 무시한 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범법자는 이미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안보위해사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위 양심수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석방되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김 없이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자의 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되는 국민적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혁명노선을 추종,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유인물과 출판물을 통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외견상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의·주장이 폭력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상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정의한 양심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가입자 및 재건자들을 양심수로 규정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맹 조직원들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정세를 혁명적 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파출소등을 습격하고 각종 폭력투쟁을 선동·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되어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받아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이 사노맹은 폭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옹호한 단체임이 명백함에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노맹 조직원들을 양심수라고 정의한 것은 사노맹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밀입북 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자의적인 대북접촉과 왕래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북한의 체제성격 및 통일전략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고 신중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통일노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의사와도 반한다. 따라서 밀입북 행위 자체는 설령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양심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위와같이 자의적인 밀입북행위는 용서될 수 없지만 신정부는 대화합 차원에서 밀입북행위자인 문규현, 임수경 등을 석방하였다.

그리고 밀입북 행위 이외에 간첩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993년 5월 구속된 황석영을 양심수로 규정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는 밀입북행위 이외에 대남공작기구 간부들과 접촉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정세를 보고하고 미화 25만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로서 석방될 수 있는 소위 양심범이 아니라 하겠다.

통일논의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민간단체와 국민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는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일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강기훈을 양심수로 인정하며 현정부에게 즉각적인 석방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기훈은 반정부시위가 한창일 무렵 故 김기설이 반정부입장을 표명하며 분신자살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강기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유리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참고인 진술등 다른 제반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강기훈의 유죄근거가 필적감정결과 뿐인 것처럼 왜곡기술하였고, 나아가 강기훈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가 바로 양심수라 단정하는 논리비약의 오류를 범하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사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불고지죄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인륜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황인오의 간첩활동을 당국에 고지하지 아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혜숙(황인오의 부인)등을 소위 양심수로

규정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런데 불고지죄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전국민이 총체적으로 대응키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이 불고지죄는 사상 또는 윤리적 양심의 표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단순한 객관적 경험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곧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불고지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반역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며(미국법전 제18편 제282조), 프랑스(형법 제100조), 서독(형법 제138조, 제139조)의 경우에도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소위 반혁명범죄나 반국가범죄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일부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불신고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위 불고지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어 지난 1991년 5월의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는 불고지죄의 대상범죄를 간첩죄등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신정부하에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는 위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더욱 없앴다.

## 미전향 장기수

국제사면위원회는 40년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안학섭과 김선명을 포함한 많은 장기수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제 석방되더라도 아무런 사회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제도는 일정한 형기를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형기를 마치기 전에 조기 석방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은전이다. 그런데 남파간첩 등 미전향 장기수들은 가석방 심사의 전제요건이 되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당화하고 공산주의사상의 전파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전향 좌익수들은 비록 고령이라 하더라도 현재 남한내에서 활동중인 지하간첩조직과 연계하는 등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록 미전향자라 하더라도 노령자와 질병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있으며 문민정

부 출범후 3회에 걸친 대사면으로 상당수의 장기수가 석방되었고 현재 구금중인 장기수도 앞으로의 수형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미전향 장기수들이 A, B, C, D급으로 분류되는 수형자중 D급 수형자로 분류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D급으로 분류된 미전향 장기수는 대부분 간첩으로서 복역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소자들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접견, 석신, 운동, 의료, 식사, 급여 등 모든 기본처우는 타 재소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장기좌익수들이 전향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사상적 오류를 깨닫고 자유민주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사회참관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신념의 포기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강요에 의한 전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전향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 고문등 가혹행위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신체의 자유권 규정이 들어간 이래 전세계에서 발표된 주요 인권선언만 해도 6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주요 논의주제 중 하나가 고문과 가혹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특히 고문등 가혹행위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 반면, 이같은 사실은 인권 침해가 전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논의가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속장소의 공개문제, 고문행위자의 처벌문제, 고문등 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 불사용문제, 고문에 따른 피해배상문제 등이다.

그런데 이를 제문제의 해결은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 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다.

문민정부는 강력한 고문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구현코자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입법화 과정에서 구속장소의 공개가 주요문제로 등장했다. 그만큼 구속장소의 제3자에의 공개는 고문·가혹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요한 것이다. 고문등 가혹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하에서는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함으로써, 고문등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상에도 구속통지, 변호인의 선임권고지, 진술거부권고지 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사법경찰관과 수사담당자들에게 제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를 수시로 감찰하고, 안기부 등 자체 구속장소가 없는 수사관서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구속 기타 가혹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있다.

지난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고 폭행한 수사관,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서 제출 후 이를 철

10/15/2014  
정재민

회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수사관등 수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재야인사 김근태에 대한 가혹행위를 이유로 경찰관 4명이 법정구속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고문행위자 처벌의 강한의지로 이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문행위가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일은 없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고문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고문행위, 가혹행위가 인정될 경우 엄히 다스리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김삼석, 김은주가 1993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된 후 각종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각 재일 한통련연계 간첩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 선고 후 현재 2심재판 계속중이다.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나 현재까지 근거가 밝혀진 바는 없고 변호인과도 자유롭게 접견하고 있다.

또한 동 단체는 1989년 8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홍성답이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의지가 박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고문·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강

하지만 위 홍성답이 주장하는 수사관 2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신정부출범 전인 1992년 8월 4일 법률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는 이를 범죄성립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고문등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에서는 그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간첩 등의 죄로 과거에 구속된 김성만, 황대권, 함주명, 안학섭, 유정식, 조상록 등이 고문에 의하여 강요된 자백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판과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고문사실의 입증등 재심사유는 발견된 바가 없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고문방법 중의 하나로 잠안재우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잠안재우기를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 국민여론이 조속한 수사결과를 희망하는 경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밤샘수사를 하며 수사관과 함께 피의자가 잡을 자지 아니하는 것이지 자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철야수사가 잠안재우기등 인

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야간수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부지불식간에 행하여진 잘못된 관행도 점차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영장없는 피의자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으며 경찰에서는 보호실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고문근절의 의사를 국제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보안관찰

보안관찰은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등 특정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보안관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보안관찰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출소후 계속적

인 관찰을 하는 범죄예방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의 기본권은 초국가적인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는데 보안처분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처분요건, 효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이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복활동방지법, 독일의 공공결사권의규제에관한법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에도 우리와 유사한 보안관찰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우리 보안관찰법은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와 주거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동태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만을 존치시킴으로써 주거이동등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사회활동상 특별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더욱 없게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도 있으나 간접등

반국가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일반법원에서 개개의 법관이 나누어 결정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통일적으로 결정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독립된 위원회인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도록 한 것이다.

보안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한결같이 그 처분권자를 행정부의 장관 또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

## 사형제도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형은 근세초에 이르기까지는 형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후 계몽사상, 프랑스혁명 등의 영향으로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각국 형법은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잔혹성을 줄였으며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데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잔혹한 점,

형벌기능중 개선적 기능이 없는 점, 오판시 구제방법이 없는 점,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살인범 등 극악한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적확신으로서 사회방위를 위하고 잔혹한 범죄의 억제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도 상이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일본 등지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사형은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할 일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 등 극히 한정된 범죄에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조직범죄와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여겨지며 대법원도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미국, 일본등지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각국의 상황과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존치자체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겠다.

## 6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문화등 제분야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적·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하여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한국 창조를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 5천년 민족사의 큰 획을 긋는 장엄한 행해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듯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길은 길고도 어려운 항해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이다.

우리는 안보라는 과중한 부담과 빈곤이라는 경제문제의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위한 힘찬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귀중하게 얻은 인권을 결코 소홀히 다

루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고, 이제는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도 떳떳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지난 1990년 국제인권규약중 A규약으로 통칭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으로 통칭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인권의 보편적 존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현재 '고문방지협약'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도 유엔의 양심이라고 일컫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이 되어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권과 동북아시아 인권 나아가 세계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인권보장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과정과 함께 달성하여야 할 길고도 힘든 여정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 다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전체에 신체,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이전, 통신연락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고 한민족 전체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틀 속에서 문민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의지를 가지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법률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환경·교육·문화·의료·노동등 전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적·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경주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 및 아동, 그리고 장애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 완전한 참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혁이 결실을 맺어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며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그 개혁의 물결이 북한동포에게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합하여 힘찬 항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개혁과 인권

---

1994년 3월 15일 印 刷  
1994년 3월 22일 發 行

發行處 法務部 法務室 人權課  
503-7044~5  
印 刷 文衆印刷株式會社  
503-7764~5

---

〈非賣品〉